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가. 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 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나. 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  
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라.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2이  
상

마. 여신충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  
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

2.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나. 총자산 :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1천억원 이상

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4이상

라. 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

마.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대율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마지막 월 기준 100분의 60이상

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1)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

2) 대출총액대비 신용대출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

②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유대의 범위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면으로 한다. 다만,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면·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면으로 한다.

③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면·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회

사채 등이 출자전환 되어 보유하게 되는 그 기업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협의를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조의3(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u>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u></p> <p>가. <u>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 100조에서 정하는 벌금형에 과(科)해지지 아니하였을 것</u></p> <p>나. <u>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u></p> <p>다. <u>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u></p> <p>라. <u>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2이상</u></p> <p>마. <u>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u></p> <p>2. <u>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u></p> <p>가. <u>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u></p> <p>나. <u>총자산 :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1천억원 이상</u></p> <p>다. <u>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4이상</u></p> <p>라. <u>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u></p>

고정"이하 분류 여신비율 : 최근 2년 사업년  
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

마.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대출 : 최근 2년  
사업연도의 마지막 월 기준 100분의 60이상

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1)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 최  
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

2) 대출총액대비 신용대출비율 : 최근 2년 사  
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

②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유대의 범위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  
의 읍·면으로 한다. 다만, 공동유대로 포함하고  
자 하는 읍·면·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  
닌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  
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면으로 한다.

③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  
면·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  
여야 한다.

제4조의3(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  
준) (생략)

제4조의4(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 (현행 제4조의  
3과 같음)

제18조의4(중앙회  
의 자금운용  
등)① (생략)

제18조의4(중앙회의 자금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  
에 상환준비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에 대한 회사채 등이 출자전환 되어  
보유하게 되는 그 기업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  
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절차  
가 진행중인 기업

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  
약·협의를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와 같음)